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창작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웹툰이나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 추가 등록 시 부담하는 수수료를 할인하여 관련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급증하는 저작권 등록 건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저작권 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저작권 등록 신청 시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저작권 등록 제도의 운영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수료 면제 요건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
여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
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5·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
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23조제2항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
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별표 비교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을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 최초 등록 후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해당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등록신청서 등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저작권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신고)한 경우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법 제89조 및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승인 신청		10,000원	
2.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5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2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3.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7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4.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10,000원	9,000원
5.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5,000원	4,000원

6.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등의 신청 및 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	3,000원	2,000원
7. 법 제55조제7항(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1,000원	면제

비고

가. 제3호에 따라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동일인에게 설정·이전 등 변동이 되어야 하며, 그 설정·이전 등의 등록사항은 그 사항별로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3호에 따른 신청물 10건 초과 시의 수수료 할인은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신청물 10건을 초과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등록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을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 최초 등록 후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해당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저작권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저 작 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여러 건 등록: 총 건)			
	② 종 류	※ 뒤쪽의 저작물 분류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v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영문)	(한자)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⑨ 신청인 구분	[] 저작자 본인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 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 별첨)			
대 리 인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절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 부 서 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수수료(1건)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신청물 10건까지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0,000원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방문·우편: 30,000원 인 터 넷: 20,000원	
4.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8. 수수료 면제 요건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예시)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DVD, USB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리커처,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CD, DVD, USB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DVD, USB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DVD, USB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 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약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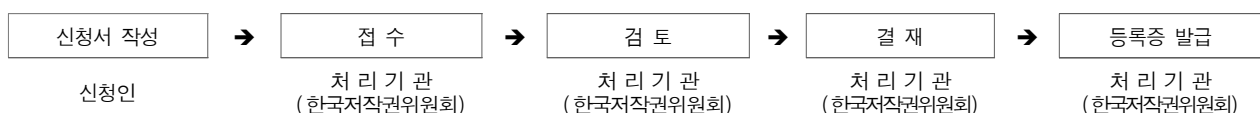
- 제호: 등록하려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 총 6건)
◆ 여러 건 등록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고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종류: 위 저작물 분류표를 참고하여 분류 및 종류를 순서대로 함께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별지 참조'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기재합니다.
예) '어문저작물>시>동시', '음악저작물>대중가요>작사·작곡', '미술저작물>응용미술>캐릭터'
-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 구분: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권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프로그램 저작물	① 제 호(명칭)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② 창작연월일	③ 공표연월일		
신청인 (등록권리자)	④ 성 명 (법인명)	(한글)	⑤ 국적	
		(한자)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휴대전화번호
⑨ 신청인 구분	[] 저작자 본인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첨부서류	1.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2.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수수료 면제 요건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 60,000원 인 터 넷 : 5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 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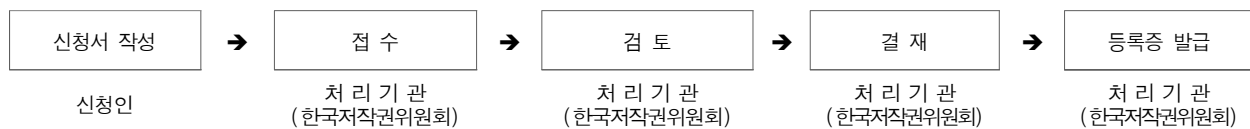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프로그램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⑤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고,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해서만 기재합니다.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내용: 등록하려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 ~ ⑧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 그 원작이 되는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⑨ 권리에 대한 지분: 공동저작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⑩ 창작연월일: 저작물이 완성된 연월일을 기재하되, 연도 또는 월까지만 기재해도 됩니다.
 ⑪ ~ ⑮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공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⑯ 성명: 저작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성명을 등록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기재합니다.

㉓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에 관한 사항 :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한 자로서 창작성 있는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기재합니다.(단순 보조, 창작의 의뢰자·주문자, 아이디어 제공자 등 창작성 있는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예시)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술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USB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 · 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리커처,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USB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USB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USB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仪,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약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USB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프로그램종류코드: □□□□□

1. 제 호		
2. 주요 내용	적용 분야	
	특징	
	주요 기능	
	사용 방법	
	판매 구분	☐ 상업용 ☐ 비상업용
3. 사용 기종	☐ IBM-PC호환기종 ☐ 매킨토시 ☐ 모바일 ☐ PDA ☐ 기타()	
4. 사용 OS		
5. 사용 언어		
6. 필요한 프로그램		
7. 규모(byte 등)		
8.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에 관한 사항(법인 등 단체 가 저작자인 경우 만 해당함)	※ 창작성 있는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표시합니다.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9. 복제물의 형태	☐ 소스 파일 ☐ 오브젝트 파일 ☐ 실행 파일 (수량 : 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저작재산권 [] 설정
[] 배타적발행권 [] 양도
[] 출판권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저 작 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여러 건 등록: 총 건)					
	② 종 류	※ 뒤쪽의 저작물 분류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신 청 인	등 록 권 리 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등 록 의 무 자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⑩ 국 적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대 리 인	⑮ 성 명 (법인명)		⑯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⑰ 주 소						
	⑱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⑲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 부 서 류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목록 -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 수수료 면제 요건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40,000원 인터넷: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저작재산권: 48,240원 배타적발행권·출판권: 24,000원	

저작물 분류표

분 류	종 류(예시)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DVD, USB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리커처,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CD, DVD, USB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DVD, USB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DVD, USB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 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USB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약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CD, DVD, USB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제호: 등록하려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 총 6건)

◆ 여러 건 등록 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에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② 종류: 위 저작물 분류표를 참고하여 분류 및 종류를 순서대로 함께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별지 참조'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기재합니다.

예) '어문저작물>시>동시', '음악저작물>대중가요>작사·작곡', 미술저작물>응용미술>캐릭터

- ③, ⑨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 등록권리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배타적발행권 설정자,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첨부합니다.

-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등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동일인에게 설정·이전 등 변동이 되어야 하며, 그 설정·이전 등의 등록 사항은 그 사항별로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권리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 설정
[] 저작권 [] 양도
[] 배타적발행권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프로그램 저작물	① 제호 (명칭)							
	② 등록 번호							
신청인	등록 권리자	③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적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자	⑧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⑨ 국적				
				⑩ 주민(법인)등록번호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주소)		(홈페이지)		
대리인	⑬ 성명(법인명)			⑭ 주민(법인)등록번호				
	⑮ 주소							
	⑯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주소				
등록 사항	⑰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 설정 [] 양도 [] 일반계약 [] 도급(용역)계약 [] 소멸 [] 기타()) 년 월 일 ([] 도급(용역)계약의 경우 실제 권리양도일)					
	[] 프로그램 저작권	[] 양도	[] 전부 ([] 개작권 미포함)					
		[] 처분 제한	[]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 당사자약정내용						
		[] 설정	채권액: , 변제기:					
		[] 변경	변경내용:					
		[] 소멸	해지내용:					
	⑱ 등록 목적	[] 설정	설정기간:					
		[] 양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					
		[] 처분 제한	[]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 당사자약정내용								
[] 설정		채권액: , 변제기:						
[] 변경		변경내용:						
[] 소멸	해지내용:							
[] 기타								

※ 등록을 거쳤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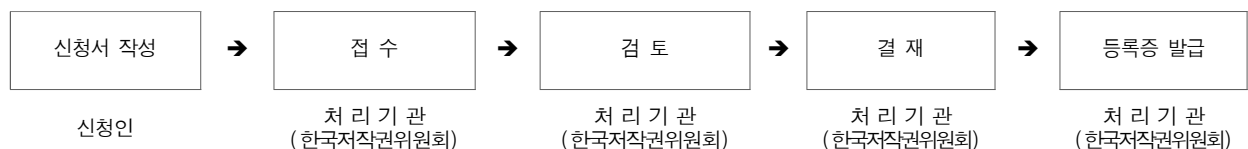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1건)	
	2.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신청물 102까지	
	5.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방문·우편: 7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인 터 넷: 60,000원	15,000원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수수료 면제 요건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24,000원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프로그램 권리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저작인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여러 건 등록: 총 건)	
	② 종 류	※ 뒤쪽의 실연·음반·방송 분류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실연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음반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 동화 [] 기타()) [] 방송 ([] 라디오 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영문)	(한자)
신청인 상 등 권 리 자 V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 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⑨ 신청인 구분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본인 [] 공동실연자·공동음반제작자·공동방송사업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리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 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점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호서식의 음반 등록신청명세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호서식의 방송 등록신청명세서 중 해당 등록신청명세서	수수료(1건)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신청물 10건까지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방문·우편: 30,000원	인 터 넷: 20,000원
4. 실연자·음반제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5. 저작인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수수료 면제 요건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실연·음반·방송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실연	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포함), 무용, 지휘 등	Tape, CD, DVD, USB, 비 디오테이프 등
음반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교재 등	Tape, CD, DVD, USB 등
방송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USB, 비디오테 이프 등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제호: 등록하려는 실연·음반·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도록 하며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애국가'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총 6 건)

◆ 여러 건 등록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고, 명세서에는 실연·음반·방송마다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② 종류: 위 실연·음반·방송 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별지 참조'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기재합니다.

- ③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 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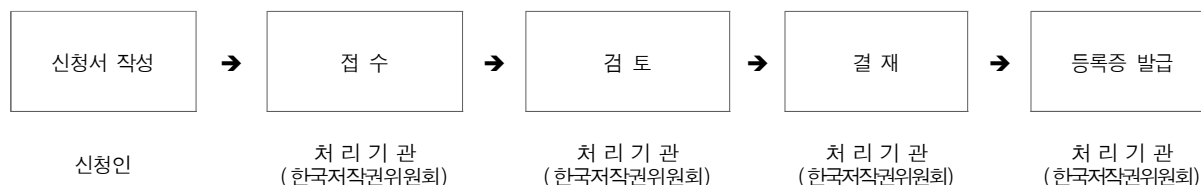
- ⑨ 신청인 구분: 공동실연자·공동음반제작자·공동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첨부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인접권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데이터베이스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여러 건 등록: 총 건)					
신청인 ^ 등록 권리 자 v	① 제호(제목)						
	②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③ 국 적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⑧ 신청인 구 분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본인 [] 공동제작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⑨ 성 명 (법인명)				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⑬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의
한
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
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관리 등록신청명령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수수료 면제 요건 증명서류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수수료 (1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30,000원

인 터 넷:
2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제호(제목): 등록하려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명칭을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명칭과 건수를 표시하도록 하며 여러 건 등록 표기 란을 선택합니다.

예) '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총 6건)

◆ 여러 건 등록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되, 명세서에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② 성명(사업자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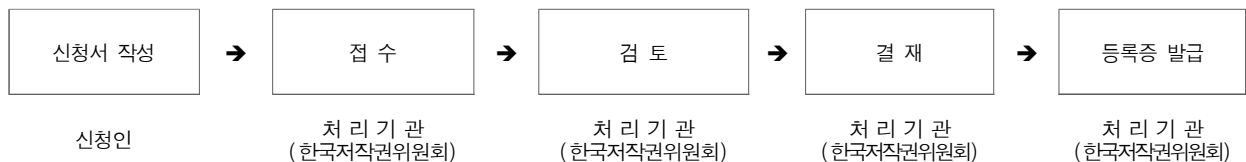
- ⑧ 신청인 구분: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저작인접권 **[] 설정**
[] 저작인접권의 **[] 양도**
배타적발행권 **[] 처분제한** **등록신청서**
[] 질권설정 등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저작인접물	① 제 호 (제 목) ② 종 류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여러 건 등록: 총 건) [] 실연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음반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 동화 [] 기타()) [] 방송 ([] 라디오 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⑥ 주 소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등록의무자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⑩ 국 적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⑮ 성 명 (법인명) ⑰ 주 소		
	⑯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⑱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 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5호서식의 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호서식의 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중 해당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수수료(1건)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신청물 10건까지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5,000원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결정문 등)		
	4.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방문·우편: 40,000원	
	5. 저작인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인 터 넷: 30,000원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수수료 면제 요건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저작인접권: 48,240원 배타적발행권: 24,000원		

실연·음반·방송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실연	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포함), 무용, 지휘 등	Tape, CD, DVD, USB, 비 디오테이프 등
음반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교재 등	Tape, CD, DVD, USB 등
방송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USB, 비디오테 이프 등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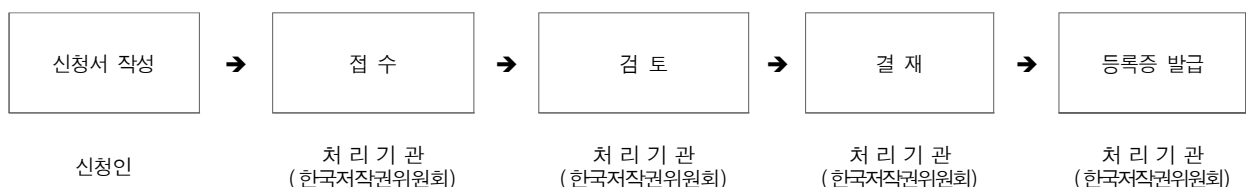
- ① 제호: 등록하려는 실연·음반·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도록 하며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애국가'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 총 6 건)
◆ 여러 건 등록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되, 명세서에는 실연·음반·방송마다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② 종류: 위 실연·음반·방송 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별지 참조'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기재합니다.
- ③, ⑨ 성명(법인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 등록권리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인접권 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여러 건 등록 : 총 건)		
신청인	데이터베이스권리자	② 성 명 (법인명)	(한글) (영문)	(한자)
		③ 국 적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실)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의무자	⑧ 성 명 (법인명)	(한글) (영문)	(한자)
		⑨ 국 적		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실)	휴대전화번호
대리인	⑭ 성 명 (법인명)		⑮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⑯ 주 소		⑰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변동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수수료 면제 요건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신청물 10건 초과 시	
	방문·우편 : 40,000원 인 터 넷 : 30,000원	추가건당 : 1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48,240원 배타적발행권 : 24,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제호(제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명칭을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와 X건'으로 명칭과 건수를 표시하도록 하며 여러 건 등록 표기 란을 선택합니다.

예) '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 총 6건)

◆ 여러 건 등록 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되, 명세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②, ⑧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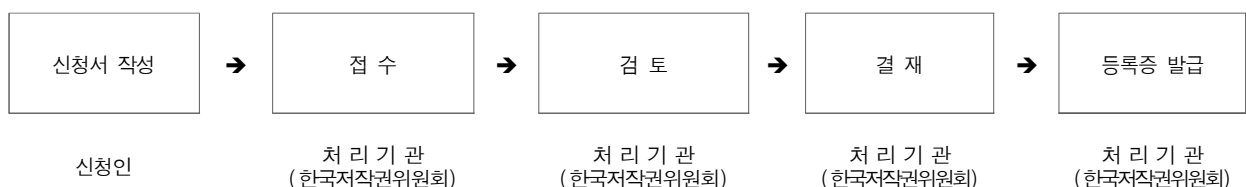
- ④, ⑩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신청서) ① (생략)	제6조(등록신청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8. 수수료 면제 요건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